

14-타. 성폭력·성희롱·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

【공시시기】 : 2023년 10월

【공시내용】 : 2022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은 작성지침 참조)

기준연도	구분	기관장 참석 여부 (○/×)	교위직			교원			직원 및 조교			학생		
			교육대상(명)	참여인원(명)	참여율(%)									
	성희롱													
	성매매													
	성폭력													
	가정폭력													

■ 작성지침

【성희롱 예방교육】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, 「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」(여성가족부)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

【성매매 예방교육】 :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」(여성가족부)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

【성폭력 예방교육】 :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」(여성가족부)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

【가정폭력 예방교육】 :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, 「2022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」(여성가족부)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

【기관장 참석 여부(○/×)】 : 참석 여부를 ○/×로 표시

※ 분교 및 캠퍼스의 경우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참석 여부를 표시

【교위직-교육대상】 : 2022. 4. 1. 기준 기관장을 제외한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교위직 수

※ 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(직급)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(대학내 부기관장(부총장), 실·처장 및 전임교원(정교수, 부교수, 조교수))

※ 단, 겸직일 경우 1명으로 인정

【교위직-참여인원】 : 교육대상 중 2022. 1. 1. ~ 2022. 12. 31. 동안 교육에 참여한 교위직 수

【교원-교육대상】 : 2022. 4. 1. 기준 기관장을 포함,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교원 수

※ 총장,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 입력

※ <6-가-1.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 현황> 을 준용하되, ① 휴직, 연수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, ② 기타교원(비전임교원) 중 대학 내에서 1회 이상 근무하지 않는 교원은 제외하고 총장은 포함

【교원-참여인원】 : 교육대상 중 2022. 1. 1. ~ 2022. 12. 31. 동안 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

【직원 및 조교-교육대상】 : 2022. 4. 1. 기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체 직원 및 조교의 수

※ 대학교 소속 직원 입력

※ <14-사. 직원 현황>을 준용하되, 휴직·연수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제외하고, 공시되지 않는 조교·외주직원·사회복무요원 등은 포함

【직원 및 조교-참여인원】 : 교육대상 중 2022. 1. 1. ~ 2022. 12. 31. 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 및 조교의 수

【학생-교육대상】 : 2022. 4. 1. 기준 재학 중인 학생

※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 입력

※ <4-마. 재적학생 현황>의 재학생을 입력하되, 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

【학생-참여인원】 : 교육대상 중 2022. 1. 1. ~ 2022. 12. 31. 동안 교육에 참여한 재학생

■ 참고사항

- 폭력예방교육 현황은 2023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2022년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자료를 공동 활용
-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실적입력 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